

1. 개정이유

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양식장에 허용되어 있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저해하여,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 도모

2. 주요내용

- 가.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(안 제5조제1항제1호)
- 나. 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개정(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피, 밀도”를 “부피”로 한다.

1. 발포 폴리스타일렌(EPS)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장부표 규격의 적용례)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동법 제2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중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조류, 패류, 피낭류양식업의 수하식양식업(이하 수하식양식업)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동법 제2조에 따른 어업면허, 어업허가 및 수하식양식업 외 양식업면허의 어장부표인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어장부표의 규격) ① 법 제 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(이하 “어장부표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. 1. 발포 부표(폴리스타일렌 부표)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<u>고밀도(0.020g/cm³ 이상) 제품</u> 2. 3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<u>규격, 부피, 밀도 및 제조자</u>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5조(어장부표의 규격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발포 폴리스타일렌(EPS)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 2. 3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규격, 부피 및 제조자</u> ----- ----- -----. <부칙>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다만,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어장부표 규격의 적용례)</u> <u>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동법 제2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중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조류, 패류, 피낭류양식업의 수하식양식업(이하 수하식양식업)에 대해 이규칙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</u>

용한다. 다만, 동법 제2조에 따
른 어업면허, 어업허가 및 수하식
양식업 외 양식업면허의 어장부표
인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
경과한 날부터 신규로 설치하는
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.